

명지학원인사규정

1-1-2

규정번호	1-1-2
제정일자	1977.2.1
최근개정	2026.5.22
개정차수	83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설립정신인 건전하고 순수한 복음주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의 구현을 위하여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관계법령과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정관을 근거로 본 법인 및 산하 각급학교 교직원의 임용자격, 임용, 신분보장 및 상벌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 향상과 인건비의 절감을 실현하여 교육지원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2019.6.25)

제2조(교직원의 정의) 본 규정에서 교직원이라 함은 본 법인 및 산하 각급 학교에 종사하는 교원(이하 이 규정에서 말하는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한 “겸임교원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과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9.6.25.)

제3조(적용 및 준용법령과 준칙) ①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본 법인정관 및 설립정신, 교육방침,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되 업무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개정 2012.6.1, 2015.7.23)

②이 규정에 의한 모든 교직원의 임용, 보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부분적으로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2019.6.25)

③이 규정의 해석과 시행은 기독교 정신인 관용과 사랑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교육상 지장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이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 격

제4조(교원의 자격 및 구분) ①본 법인의 설립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건전하고 순수한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②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학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③교원[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대학교육기관의 강사(이하 ‘강사’라 함), 조교, 교장, 교감, 원장, 원감, 교사]의 임용자격은 초·중등교육법 및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6.1., 2019.6.25)

④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전공분야의 심오한 이론과 기술을 터득하고 항상 관계분야의 최신 정보를 정확히 입수하여 연구하고 교육하여야 할 뿐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한 인격을 함양하

여 학생들을 정성을 다하여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2.6.1)

⑤교목, 대학교회목사와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목, 대학교회목사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인정하는 교파 또는 위촉한 목사자격고시위원회
회의 고시에 합격하여 목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2. 전도사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중등교사 이상의 자격증소지자이어야 한다.

제5조(직원의 자격 및 구분) ①본 법인의 설립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건전하고 순수한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전문적인 업무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자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임용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②직원은 사무직원(일반직, 기술직) 및 계약직원(계약직, 촉탁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7.23., 2022.2.22.)

③일반직은 참여(2급), 부참여(3급), 참사(4급), 부참사(5급), 주사(6급), 부주사(7급), 서기(8급), 부서기(9급)로 구분하고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3.1)

④(삭 제, 2002.5.1)

⑤기술직은 5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하고 임용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 및 면허증을 소지한 자라야 한다.(개정 2011.11.30., 2015.7.23., 2020.06.23., 2022.2.22.)

⑥(삭 제, 2015.7.23)

제 3 장 임 용

제6조(임용의 원칙) ①본 법인 산하의 모든 교직원에 대한 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부분적으로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삭 제, 2002.5.1)

제6조의2(학교의 장 임명) ①총장 및 교장은 이 법인의 설립정신인 기독교 정신과 교육방침 및 정관, 기타 제규정을 승복 준수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09.3.1., 2015.12.3.)

②학교의 장이 이사인 경우에는 자신에 관한 임용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이 특별히 참여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21.)

제7조(대학교원의 임용) ①대학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없을 경우에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임용하되, 학위과정이 설치되지 아니한 특수한 분야와 외국어회화 등 실기, 실습을 위주로 하는 분야는 학사학위 소지자이거나, 특히 예·체능계 및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또는 예능보유자의 경우는 학력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우수한 자를 임용할 수 있으

며 국내외의 공공기관 등에서 연구업적 및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특별 채용 할 수 있다.(개정 2009.8.1., 2012.6.1., 2019.6.25)

②강사의 임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학교의 장이 임용기준과 절차 및 임용기간, 급여 등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따로 정한다.(삭제 2015.7.23., 신설 2019.6.25)

③조교의 임명은 정원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9.3.1)

④대학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3.1)

⑤대학교육기관의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개정 2016.12.21., 2019.6.25., 2024.06.17.)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관 제50조의 4(정년)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법인보수규정에 의한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3. 근무조건

주당강의시간 및 소속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교원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9.3.1)

1. 교 수 : 정년보장

2. 부 교 수 : 5년부터 7년

3. 조 교 수 : 3년

4. 삭제(2012.6.1)

⑦교원의 재임용은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당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재임용한다. 다만, 강사는 당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재임용한다.(이하 이 규정에서 말하는 교원은 강사를 제외한다.)(개정 2019.6.25.)

⑧교원 중 교수로 승진되는 자나 신규임용된 교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정년보장교원 임용 심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정년보장의 조건으로 신규임용되는 교수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임용한다.

⑨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학교의 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의2(초·중·고등학교의 교원 임명)(조명변경 2022.06.29.) ①초·중·고등학교의 교사임명은 원칙적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단, 초등학교는 학사학위 이상)로서 공개채용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임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06.29.)

②(삭제 2009.3.1)

제7조의3(유치원교원의 임명)(조명변경 2022.06.29.) ①유치원 교사임명은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임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3.1., 2022.06.29.)

②(삭제 2009.3.1)

제7조의4(삭제 2009.3.1)

제7조의5(임용절차) ①신규교원 임용시에는 사전 총원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 학교에서 모집공고를 하며 응시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여 임용유자격자를 선정한다.(개정 2011.10.1)

②학교의 장은 선정된 임용유자격자에 대하여 평가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유치원 제외)를 거쳐 임용적격자를 이사장에게 제청한다.(개정 2009.3.1., 2011.10.1., 2022.06.29.)

제7조의6(특별채용) ① 특별채용은 인사규정 제7조제1항에 의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 공공기관 등에서 연구 업적 및 그 공적이 탁월한 자
2. 학문적 역량이나 연구실적이 탁월한 자
3. 특정분야의 교육 및 연구에 상당한 경력을 갖춘 자
4. 기타 학교의 발전에 필요한 자

②특별채용교원 임용시에는 사전 총원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며,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학교의 검토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특별채용은 연중 수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임용일자는 3월1일 또는 9월1일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5.1)

④특별채용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공개채용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⑤기타 특별채용교원의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 세부사항은 해당 학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신설 2009.8.1]

제8조(사무직원의 임용) ①사무직원(일반직, 기술직)의 신규 임용시에는 총원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당해 학교의 장이 제청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7.23., 2022.2.22.)

②(삭제 2009.3.1)

③사무직원은 결원이 있을 경우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신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규 임용자는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6개월의 시보기간을 두어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품행과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한하여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자를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9.3.1)

④제1항의 신규 임용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도 제7조의5(임용절차)의 교원임용절차를 준용하고,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제7조의6(특별채용)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3, 2009.8.1)

⑤신규 임용시 직급은 해당 직종의 최하위 직급 임용을 원칙을 한다. 다만, 신규임용자의 자격과 경력에 따라 적의 조정 실시할 수 있다.

⑥기술관련분야 및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22.2.22.)

제8조의2(직원의 인사교류) ①각급학교의 사무직원(일반직, 기술직)은 기관 상호간 전직, 전보, 전근, 파견 및 겸임근무케 할 수 있다.(개정 2009.3.1, 2009.11.16., 2015.7.23., 2022.2.22)

②(삭 제)

③인사교류는 국가공무원법 및 기타법령에 의거 각 기관의 균형발전과 기관상호간의 보완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필요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7.23)

제8조의3(계약직원의 임용) ①제8조의 사무직원 이외에 필요에 따라 임용하는 계약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직 :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채용하는 자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다. 일반직원의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할 경우

라. 일반직원의 업무를 보조·지원할 경우

2. 촉탁직 : 법인 및 산하기관에서 정년이 지난 자 중에서 채용하는 자

②계약직원의 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교의 장이 임용계획서(직종, 자격, 인원, 사유, 보수, 기간 등 포함)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4.23, 2010.3.1, 2011.10.1, 2014.7.1)

③계약직원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직 :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3제1항제1호가 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2. 촉탁직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직원은 임용기간 중에는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⑤계약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휴직을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⑥기타 세부사항은 계약직원 세부시행지침에 따른다.

⑦초·중·고등학교 계약직원은 단위학교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3.1)

[본조신설 2009.3.1]

제9조(보직) ①법인의 사무국장과 법무감사실장은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보임한다.(개정 2011.9.1., 2015.7.23., 2025.12.29.)

②대학교의 부총장은 교수로 대학원장, 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당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보임한다. 다만,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수가 아닌 교원을 부총장으로 보임할 수 있다. 실·처장(부실·처장 포함), 대학원 교학처장, 사회봉사단장, 인권·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단, 교목실장은 목사자격을 소지한 교원으로 보하며, 기획조정실장, 사무(지원)처장 및 부실·처장은 일반직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이 이사회에 내신하여 이사장이 보임한다.(2005.3.10, 2008.2.20, 2009.3.1, 2009.11.2, 2012.2.20, 2013.8.30, 2014.3.1, 2014.12.22, 2015.7.23., 2015.12.3., 2016.3.26., 2019.4.30., 2022.4.28., 2023.08.29., 2026.01.27., 2026.05.22)

③부속기관장, 부설교육기관장, 부설연구소장, 학장보, 교학부장, 센터장 등의 보직에 관하여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부학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단, 체육부장은 참사이상으로,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장 및 명지기독교학술원장은 외부저명인사로 보할 수 있다)으로서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이 보임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2008.2.20, 2010.5.1, 2011.3.1., 2013.6.3., 2024.04.25.)

④교학과장, 학과(부)장, 신문사주간 및 생활관장(기숙사사감), 주임교수 등의 보직에 관하여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부관장(부사감)은 목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보임 하되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이 보임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단, 생활관장(기숙사사감)은 목사 또는 참사 이상의 일반직으로 보 할 수 있다.

⑤전문대학의 부총장은 교수 또는 동등 이상의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학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당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사무직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보임한다. 단,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이 이사회에 내신하여 이사장이 보임한다.

1. 실·처·단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본부장과 학술정보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교목실장은 목사자격을 소지한 교원으로 보하며, 기획실장, 사무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5.6.27., 2025.12.29.)
2. 부실차단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0.3.1, 2010.8.1, 2011.11.30, 2011.12.6, 2013.8.30, 2015.4.7, 2015.7.23., 2015.12.3., 2018.6.25., 2019.12.19., 2022.2.22.)

⑥전문대학의 부속기관장, 부속교육기관장, 부학부장, 부설연구소장, 부설센터장, 학과장 및 주임교수 등의 보직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단, 생활관장(기숙사사감)은 목사 또는 참사 이상, 부설센터장은 참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으로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보임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단, 제5항의 보직을 제외한다.(개정 2013.8.30., 2018.6.25., 2020.8.27., 2025.12.29.)

⑦대학(교)의 사무(지원)부처장은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팀장은 주사이상의 직원으로 이사장이 보임하며 인사, 구매, 회계, 출납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등 충분한 재정보증을 확보하여야 한다.(2010.3.1)

⑧(삭 제, 1999.1.12)

⑨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교감은 당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보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기타 보직교사 보임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임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이 발령하고 이

사장에게 보고하며, 그 임기는 학년도 1년 단위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초등학교 행정실장은 부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중학교 행정실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고등학교 행정실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이사장이 보임한다. 단, 필요한 경우 유치원의 서무과장은 부주사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8.1., 2016.12.21., 2022.06.29., 2023.08.29.)

⑩(삭제 2009.3.1)

⑪대학교수의 보직연한은 다음과 같다. 단, 연임할 수 있으며, 학내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임용할 수 있다.(2008.2.20, 2009.11.2, 2012.2.20, 2014.3.1., 2014.12.22., 2016.12.21., 2026.01.27., 2026.05.22.)

부총장 : 2년

대학원장 : 2년

단과대학학장 : 2년

행정실 처(과)장, 대학원 교학처장, 사회봉사단장 : 2년

도서·박물관장 : 2년

학부(과)장 : 2년

기타 행정보직 : 2년

⑫제1항부터 제9항의 보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미보임시에는 이사장이 직무대리를 보할 수 있다(신설 2009.8.1)

제10조(겸임교원 등의 임용) 대학교육기관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비전임교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학교에서 별도로 정하여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개정 2012.6.1., 2015.7.23., 2019.6.25)

제10조의2(명예교수) ①고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법인 산하 대학교육기관에서 전임교원으로 25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퇴직당시 교수로 있던 자로서 재직중 설립정신구현 업적이 두드러지며 교육상,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건강한 자는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다만, 당해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동등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명예교수의 추대는 학교의 장이 추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이 추대한다.(개정 2019.6.25.)

③명예교수로 추대된 자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교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

④명예교수의 처우는 다음과 같다

1. 총장은 명예교수에게 강의 또는 연구할 수 있도록 위촉할 수 있으며 대학교육기관의 보수규정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분의 급여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명예교수는 대학교육기관의 제 의식에 있어서 대학교육기관의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제10조의3(시간강사의 위촉) ①(삭제 2019.6.25.)

②(삭제 2019.6.25.)

③(삭제 2019.6.25.)

④(삭제 2009.3.1)

⑤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시간강사 위촉은 교원정원 범위내에서 대학교육기관의 강사위촉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0조의4(삭 제, 2002.5.1)

제10조의5(전임교원의 소속 및 교과목 변경) ①대학교육기관 전임교원은 단과대학, 학부(과), 전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에 속한다.(개정 2024.06.17.)

②소속의 변경은 매 학년도 3월 1일과 9월 1일자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이 발령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9.3.1., 2011.10.1., 2024.06.17.)

③중·고등학교 교원의 담당교과목 변경은 당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발령한다.

제10조의6(외국인교원 임용) ①대학교육기관에 외국인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 보수 및 처우는 별도의 계약에 의거하고 그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외국인교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해 대학(교)에서 별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0조의7(기간제교원 임용) ①임용권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6.12.21., 2025.10.30)

1. 교원이 제2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 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개정 2012.6.29., 2022.06.29.)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제1항에 의해 임용된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임용기간 3개월 이하의 기간제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신설 2025.10.30.)

제10조의8(겸소속) 대학교육기관은 교육 및 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직 중인 전임교원에게 원소속 이외에 교내 타소속을 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06.17.)

제 4 장 보 수

제11조(보수규정 준용) 교원 및 사무직원(일반직, 기술직)의 보수는 법인 보수규정에 따르며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일반기업체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3.1., 2015.7.23., 2022.2.22.)

제 5 장 승 진

제12조(승진, 승급요건) ①교직원의 승진 또는 승급은 교직원이 본 법인의 복무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복무의 의무를 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을, 직원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단, 대학(교) 교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명지학원 보수규정을 따른다.(개정 2009.3.1., 2017.12.27)

②대학교원의 승진은 임용요건이 충족된 자를 해당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승진 발령한다.

③(삭 제, 2001.9.1)

④승진임명의 경우 직급별 인원은 관할청에서 시달한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가급적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총장이 해당 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정한다.

⑤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 직급에서 최소한 아래의 기간 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학위가 없는 자의 직급별 승진 최저소요연수와 부교수 승진 최저소요연수의 세부 사항은 대학(교)의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대학(교)의 교원 승진 최저 소요연수(개정 2012.6.1)

조 교 수 → 부교수 : 4년 또는 6년

부 교 수 → 교 수 : 5년

⑥사무직원은 해당 직급에서 최소한 다음에 정한 연수에 도달한 경우에 승진임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개정 2009.3.1, 2011.11.30)

1. 일반직의 승진 최저 소요연수(개정 2011.1.1, 2015.7.23)

9급 → 8급 : 2년, 8급 → 7급 : 3년

7급 → 6급 : 3년, 6급 → 5급 : 4년

5급 → 4급 : 5년, 4급 → 3급 이상 : 원칙적으로 법인 및 각급학교에서 25년 이상 근속자로서 학교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2. 기술직 승진 최저 소요연수(개정 2015.7.23., 2020.06.23., 2022.2.22.)

가. 9급 → 8급 : 2년, 8급 → 7급 : 3년

7급 → 6급 : 3년, 6급 → 5급 : 4년

나. (삭제, 2022.2.22.)

다. 6급 해당자로서 본 법인 및 각급학교에서 25년이상 근무한자는 5급 일반직대 우로 발령할 수 있다.(신설 2015.7.23)

3. 포상자의 경우 포상의 종류에 따라 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 소요연수에 가산할 수 있다.

4. 설립정신구현 능력이 뛰어나고 근무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위 1호 내지 3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대우직원) ①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는 중·고등학교 일반직원중 당해 직급에서 일정연수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대우선발직원은 당해 직급에서 다음에 정한 연수에 도달한 경우 대우선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단, 경력 산정시 임용전 군경력은 삭제한다. (개정 2011.11.30., 2016.12.21)

· 5급→4급대우 : 사무직원 경력이 총 26년이상이고 당해 직급 7년이상

· 6급→5급대우 : 사무직원 경력이 총 19년이상이고 당해 직급 5년이상

· 7급→6급대우 : 사무직원 경력이 총 12년이상이고 당해 직급 5년이상

- 8급→7급대우 : 사무직원 경력이 총 7년이상이고 당해 직급 5년이상
- 9급→8급대우 : 당해 직급 5년 이상
- (삭제, 2014.3.1)

③제1항에 의하여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5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에 준한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3(근속승진) ①국고 보조금을 지원 받는 중·고등학교 8급 이하 일반직원 중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근속 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단, 경력 산정 시 임용전 군경력은 삭제한다. (2010.3.1, 개정 2011.11.30., 2014.3.1., 2016.12.21)

1. 일반직 :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8→7급 : 총경력이 9년 이상이고, 당해 직급에서 7년 이상 (개정 2016.12.21., 2021.4.22.)

나. 9→8급 : 당해 직급에서 5년 6개월 이상 (개정 2016.12.21., 2021.4.22.)

2. (삭제, 2014.3.1)

제12조의4(부처장 및 팀장 대우) ①대학교 일반직원 중 부참여 이상으로 부처장 대우로 발령할 수 있다.(신설 2011.8.1)

②대학교 일반직원 중 정년 퇴직예정일 최대 2년 전에 팀장대우로 발령할 수 있다.(항 번호 변경 2011.8.1)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대우로 발령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준하는 직책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9.4.23](개정 2011.8.1)

제13조(승진 및 승급제한) ①해당 학교의 장은 승진(보직임명 및 직급승급) 대상자에 대한 현황을 이사장에게 작성 제출하고, 이사장은 법인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교직원 전원에 대하여 정관 제84조(임용) 제2항으로 규정한 일반직원 인사평정 규칙 등의 실증사항을 적용, 제반 자격(능력) 사항의 심사(시험)를 실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발령한다.(개정 2009.3.1, 2010.3.1)

②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경우는 승진임용을 제한하며 직무수행능력과 근무성적 불량 및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③교원이 연구, 수업, 학생지도 또는 근무상태가 불량한 경우는 승진, 승급을 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④교원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승진 임명한다.(개정 2010.3.1)

⑤사무직원에 대한 승진임용은 매년 3월 1일에 시행한다. 다만, 특별 승진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9.3.1)

제14조(교육훈련) 모든 교직원에게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훈련을 실효 있게 실시하여 자질의 향상을 촉구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성적과 근무성적이 모두 불량한 교직원은 승급기간의 연장 또는 직위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7.23)

제15조(수상요건) 본 법인과 학교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교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학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부 인사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제16조(포상구분) 포상은 공로상, 학술상, 근속상(10년, 20년, 30년, 40년) 및 기타 표창으로 구분한다.(개정 2009.3.1, 2009.8.1)

제16조의2(근속연수의 산정) 근속연수는 본 법인과 산하교육기관 및 수익사업체에서 전임교직원으로 중단 없이 계속하여 재직한 연수로 계산한다. 다만, 임시직(촉탁등)으로 임용된 기간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3(근속표창의 시기) 근속표창은 매년 개교기념(행사)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년으로 퇴임하는 자가 퇴임전에 근속표창년수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상한다.

제16조의4(근속표창의 제한)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근속표창을 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자 : 3년
2. 직위해제후 복직된 자 : 3년

제17조(포상방법) 포상을 할 때는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하며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8조(포상자) 포상은 이사장과 각급 학교의 장이 행한다.

제19조(포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 부사항은 표창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신분보장

제20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①교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직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는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설립정신의 구현능력과 공헌, 연구업적, 인화와 학생지도 능력이 우수한 경우 당해 대학의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재임용한다.

제21조(정년) ①교직원의 정년 정관 제5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정년 해당자는 정년 되는 학기말에 퇴직한다. 다만, 초·중·고등학교의 사무직원 정년 해당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08.26.)

③정년에 관련된 업무관장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퇴직예정일 최대 3월 전에 퇴직준비휴가를 명할 수 있다.
2. (삭 제)
3. 퇴직준비휴가 기간중에는 종전과 같은 처우를 하되 직책비는 제외한다.

4. 퇴직준비휴가일로 후임자를 임명하고 인계인수한다.

5. (삭 제, '99. 1. 12)

6. 본항은 학교법인 명지학원 전기관에 적용하고 수익사업체는 이를 준용한다.

④법인 및 산하 각급학교에서 25년 이상 근속하고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5년범위 안에서 이사장이 1년단위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기간 중에는 승진 및 승급은 할 수 없다.

제22조(삭제 2009.3.1)

제23조(당연퇴직)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단,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2.2.20)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2022.2.22.)
8.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
9. 교원자격증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신설 2022.2.22.)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자를 포함한다.)(신설 2022.2.22.)

제23조의2(명예퇴직) 교직원의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정관제50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직권면직)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직원의 임명권자는 이를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2.2.20)

1.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호번호 변경 2012.2.20)
2. 정부 또는 이 법인의 각 기관을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호번호 변경 2012.2.20)

3.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호번호 변경 2012.2.20)
4.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5. 학교 또는 법인의 금품을 횡령하였을 때(호번호 변경 2012.2.20)
단,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호번호 변경 2012.2.20)
6.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호번호 변경 2012.2.20)
7. 직제와 정원의 개폐 및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제25조(휴직의 사유) ①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 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2019.8.27.,2022.06.29.)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15.7.23)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 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임시로 고용된 때(개정 2015.7.23)
7.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12.4.3.)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신설 2019.8.27)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구하게 된 때
9.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소행이 있어 학교의 체면을 손상하였을 때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1.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등에 출마하게 된 때
12.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신설 2019.6.25)

14.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개정 2016.12.21., 2019.6.25)

②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법」 제2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개시일 전까지 교원의 직을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그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개정 2015.7.23)

③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교원의 학교의 장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0.31)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12.4.3., 2016.12.21., 2019.8.27)

제25조의2(연구년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년제 혜택을 줄 수 있다.(개정 2012.5.1)

제26조(휴직의 기간) ① 교직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1년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8.27.)
2.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2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4. 제2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2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25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직원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6의2. 제25조 제1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19.8.27.)
7. 제2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연구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8.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기간을 3월이내로 한다.
9. 제25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25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의 휴직기간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15.7.23)
11. 제25조 제1항 제12호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2. 제25조 제1항 제13호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신설 2019.6.25.)

13. 제25조 제1항 제14호로 인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6.25.)

②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인 경우 전항의 휴직기간은 정관 제43조 제2항과 인사규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2호, 제4호 내지 제11호 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휴직교직원의 신분) ①휴직중의 교직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당해 임명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며, 이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10.31.,2022.06.29.)

③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직원은 제2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28조(휴직교직원의 처우) ①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직원은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할을,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할을 지급하며,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단,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9.8.27)

2.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직원은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2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4호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6.25.)

제29조(직위의 해제) (조명 변경 2017.2.22.)①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②정관 제48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학교의 장은 취임당시 선서한 설립정신구현을 위하여 복음주의 정통신앙 생활을 하지 않거나 반기독교적인 언행으로 교직원의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교직원간의 친목을 해치고 학원질서를 문란케 하는 언행을 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그 직위를 해제한다. 이 경우 직위해제의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③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12.21.)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개정 2016.8.25.)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자(신설 2016.8.2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3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6.8.25.)

⑤임용권자는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6.12.2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⑦제1항 또는 제3항의 제1호와 제2호·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제2호·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3.1.,2016.8.25)

⑧(개정 2016.12.21., 삭제 2017.2.22.)

제30조(휴직과 근속통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통산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국가기관 추천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국외기관에 근무한 경우 그 휴직기간
4. 제25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휴직기간(신설 2012.4.3)

②제30조 제1항 외의 기타 휴직기간은 2분의 1의 비율로 근속기간에 통산한다.

③(삭 제)

제31조 (삭 제)

제 8 장 징 계

제32조(징계사유 및 징계요구) ①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기타 공무원법 등의 법령 또는 본 법인의 설립정신과 소속기관의 제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3. 법인 및 각급학교 내외에서 교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위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책임자가 그 하자 또는 과실에 대한 내용(관계자 성명, 과실행위, 일시, 장소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의 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비위사실보고 및 징계요청에 대한 의무를 태만하였을 때에는 관계책임자 또는 상급책임자를 즉각 문책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제33조(징계의 종류) ①교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신설 2015.7.23.)

②직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신설 2015.7.23)

제34조(강등, 정직, 감봉과 견책) ①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3.,2022.06.29.)

②정직은 1개월이상 3개월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항번호변경 2015.7.23.,개정 2019.12.19)

③감봉은 1월이상 3월이내로 처분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항번호변경 2015.7.23)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항신설 2015.7.23)

제35조(징계보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 또는 요구된 사건이 검찰, 경찰, 기타 조사기관에서 조사중인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3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교원의 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8.25.,2022.06.29.)

1.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 6인 (신설 2016.8.25.개정 2022.06.29.)

2.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은 3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신설 2016.8.25.개정 2022.06.29.)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6.8.25.)

나. 다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신설 2016.8.25.)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신설 2016.8.25.)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16.8.25.)

마.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2.06.29.)

③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8.25.)

④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학교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인의 이사와 학교의 장이 추천한 당해 학교의 교직원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하여 구성한다.(개정 2022.06.29.)

⑤징계사유가 발생한 학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징계위원회의 회의장소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학교로 한다.

⑦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8.25.개정 2022.06.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정관 제64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7조 (삭 제)

제38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06.29.)

제40조(제척사유) 징계위원회 위원은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0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여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제41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8.25.)

제42조(징계기준)(조명변경 2019.12.19)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②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1.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의결 대상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개정 2019.12.19.)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6.12.21.,2019.12.19)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록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삭제 2019.12.19.)

⑤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삭제 2019.12.19.)

제42조의2(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조신설 2019.12.19.) ①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 또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항에 정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3.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자가 철저히 감독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제42조의3(징계의 감경기준 등)(조번호 변경, 조명변경 2019.12.19.) ①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하되, 징계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별표3]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4.1.,2019.12.19)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관할청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이사장 또는 기관장 표창을 받은 공적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신설 2019.12.19.)

③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 [별표3]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9.12.19.)

제42조의4(징계의결)(조신설 2019.12.19.)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의견이 다를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이사장 또는 위임받은 임용권자는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록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징계의결서의 사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해야 한다.

제43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은 5년, 성 관련 범죄 및 연구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와의 문서왕래 등 소멸시효 중단의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때부터 기산한다.(개정 2012.6.29., 2015.7.23.,2023.08.29.)

제44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피징계자의 해당 학교의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권자가 임명한다.(개정 2012.6.1)

제45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재심) 교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일반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재심은 일반직원징계재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를 법인에 두어야 한다.(개정 2012.6.29)

제47조의2(일반직원징계재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조신설 2012.6.29) ①일반직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기 위하여 일반직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재심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재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직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나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당해 학교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
3. 법인 이사

제47조의3(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조신설 2012.6.29) ①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의4(재심청구)(조신설 2012.6.29) 일반직원이 징계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처분결정서의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와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소속(전소속), 직위(전직위)
3. 처분사실을 인지한 날짜
4. 재심청구의 취지
5. 재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제47조의5(재심위원회의 심사)(조신설 2012.6.29) ①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의 출석과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한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재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47조의6(심사의 범위)(조신설 2012.6.29) 재심위원회는 징계 또는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제47조의7(재심청구인의 진술권)(조신설 2012.6.29) ①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재심청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재심의결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위배되는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47조의8(재심청구의 취하)(조신설 2012.6.29) 재심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47조의9(재심위원의 제척)(조신설 2012.6.29) 재심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에 계류된 재심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다음 각 사항에 관한 재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건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제47조의10(재심위원회의 결정)(조신설 2012.6.29) ①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의견이 다를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재심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징계의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재심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재심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계처분을 파기하고 처분권자에 환송하여 다시 징계를 하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기환송 결정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7조의11(재심심사 결정서 작성)(조신설 2012.6.29) 재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심사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재심사건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47조의12(재심심사 결정서의 송부)(조신설 2012.6.29) ①재심심사 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재심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심사 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회의 과실없이 재심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인의 주소, 성명과 결정주문을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에 결정서는 당해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47조의13(재심결정의 효력)(조신설 2012.6.29) 제4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제47조의14(재심위원 수당 등)(조신설 2012.6.29) 재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의15(재심위원회의 간사 등)(조신설 2012.6.29) ①재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인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47조의16(운영세칙)(조신설 2012.6.29) 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9 장 인사위원회

제48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개정 2022.06.29.)

제4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7.23)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용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용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2010.3.1., 2015.7.23., 2016.12.21)
2.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신설 2019.6.25.)
3.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부총장(교원의 경우에 한한다)·대학원장·학장(전문대학은 학부장)의 보직 제청을 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5.7.23., 2019.6.25)
4.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7.23., 2019.6.25)

② 초·중·고등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7.23., 2022.06.29.)

1.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5.7.23., 2016.12.21)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개정 2015.7.23)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2015.7.23)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5.7.23)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7.23)

③ 인사위원회가 제7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용 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항신설 2015.7.23., 개정 2016.12.21)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의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50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5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하되, 인사위원회의 정수는 학교별 교원인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11.10.31)

제51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부총장 또는 교육지원처장(교무처장)중에서 위원장을 임명한다.(개정 2015.7.23)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2조(인사위원회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4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5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56조(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 교수의 정년보장 임용심사를 위하여 당해 학교에 정년보장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7조(직원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에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직원의 승진, 승급 및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인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인 총무부장 및 재정부장, 각 대학(교)의 사무(지원)처장 및 총무(인사)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인 이내의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9.1, 2015.7.23)

④위촉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⑧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4년 3월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5년11월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6년 2월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6년 3월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6년 9월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6년11월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87년 2월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지대학교 교회) 명지대학교교회의 인사는 명지대학교 교회 규정(규정 제3호)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한다.

제3조(수익사업체) 본 법인이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수익사업체 및 학생실습업체는

명지전문대학 규정 / 1-1-2 명지학원인사규정

당해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지명한 자가 본 법인의 수익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제4조(비상조치) 전시 또는 이사회가 비상사태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와 당해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결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과조치) ①본 규정 시행당시 정년에 해당되는 직원(사무, 기술 및 기능직)은 시행당시의 학년도 말에 퇴직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한다.

③이 규정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규정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규정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1997년 9월 1일 이후 승진 및 재임용 대상 교원부터 적용하고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교수와 부교수로 재직중인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1-1-2 명지학원인사규정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5조 제3항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월 9일부터 시행하되, 제9조 제4항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1-1-2 명지학원인사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의과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초빙교수로 임용된 자가 제10조의 단서에 저촉될 경우에는 2006년 2월 28일에 면직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명지빌딩관리사무소 규정을 2009년 3월 1일부로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명지전문대학 규정 / 1-1-2 명지학원인사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3조 제4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제3항)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제5항)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2조 제6항 제1호)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제3항)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2조의4)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제1항, 제57조 제3항)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의5 제1항, 제2항, 제8조3 제2항, 제10조의5 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5조 제1항 및 제3항, 제27조 제2항, 제50조 제1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 제12조 제6항제2호,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 10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한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임용권자는 이 규정 시행 당시 기능직 10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을 제12조,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능직 9급 직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06.23.)

1.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기능직 10급 임용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직원 :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11.12.30. 이전(개정 2020.06.23.)

2.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기능직 10급 임용일로부터 2년이상 4년 미만 경과한 직원 :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11.12.31(개정 2020.06.23.)

3.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기능직 10급 임용일로부터 2년 미만 경과한 직원 :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12. 5.23(개정 2020.06.23.)

②임용권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능직 10급 직원으로 재직 중인 직원을 기능직 9급 직원으로 승진 임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직 직원의 정원 중 제1항에 따라 기능직 10급 직원에서 기능직 9급 직원으로 승진임용하는 직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직 9급 직원의 정원이 증가하고, 같은 직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직 10급 직원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06.23.)

제3조(기능직 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 직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 ①기능직 10급 관련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직 10급 직원의 채용시험 합격자는 기능직 9급 직의 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개정 2020.06.23.)

②기능직 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기능직 10급 직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기능직 10급 관련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기능직 9급 직원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06.23.)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제5항)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제5항, 제23조 5호, 제24조)

명지전문대학 규정 / 1-1-2 명지학원인사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5조 제1항 7호, 제4항, 제30조 제1항 4호)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의6 제3항, 제25조의2)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3항 및 제4항, 제7조 제1항, 제5항 및 6항, 제10조의3 제2항, 제12조 제5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 제1항, 제4조 제3항 및 제4항, 제7조 제1항, 제5항 제1호, 제6항 제4호, 제10조, 제10조의3 제2항, 제12조 제5항, 제44조 제2항)

제2조(전임강사 직급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당시 전임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는 조교수로 보며, 급여 등 계약사항은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②2012년 7월 1일 이전에 조교수로 임용된 자는 개정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의7 제1항 제3호, 제43조, 제46조, 제 47조 내지 제47조의15)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제9항)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3조)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제2항, 제5항, 제6항)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8조의3 제7항, 제9조 제2항 및 제11항, 제12조의2 제2항, 제12조의3 제1항 제2호)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8조의3 제2항)

명지전문대학 규정 / 1-1-2 명지학원인사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제2항, 제11항)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제5항)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제5항·제6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8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9조 제1항·제2항·제5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14조,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제25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4조 제1항, 제43조의2, 제49조 제1항·제2항, 제51조 제1항, 제57조 제3항)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의2제1항, 제9조제2항·제5항)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제3항·제4항·제7항, 제36조 제2항·제3항·제7항, 제41조 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제3조제2항, 제6조의2제2항, 제7조제5항, 제8조의3제5항, 제9조제9항·제11항, 제10조의7제1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1항1호의‘가’목‘나’목, 제25조제1항·제1항13호·제4항, 제29조제3항·제5항·제6항·제8항, 제32조제2항, 제40조의3, 제42조제3항, 제49조제1항1호·제2항1호·제3항)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제8항)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제1항)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제5항·제6항)

명지전문대학 규정 / 1-1-2 명지학원인사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제2항)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7조제2항과 제7항, 제10조의3제1항 내지 제4항, 제36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강사 및 시간강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되는 대학교육기관의 강사부터 적용하며,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임용된 시간강사에 대하여는 개정전 규정(제10조의 3)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26조 제1호 및 제28조 제1항 제1호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5항, 제12조제6항, 부칙 제2조, 제3조(2011.11.30.))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제6항)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12조의3제1항제1호)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1항 · 제5항, 제8조제1항 · 제6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5항제1호 · 제2호, 제11조, 제12조제6항, 제23조제7호 · 제10호, · 제11호)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9조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 제7조의5제2항, 제9조제9항, 제10조의7제1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6조제2항제4항, 제39조, 제42조의4제2항, 제48조, 제49조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9조제2항 · 제9항, 제43조)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9조제3항)

부 칙

명지전문대학 규정 / 1-1-2 명지학원인사규정

이 규정은 202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7조제5항제3호,제10조의5제1항·제2항,제10조의8)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9조제9항)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9조제5항)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1조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10조의7제1항·제3항)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제1항·제5항·제6항)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제2항·제11항)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제2항·제11항)